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74

발의연월일: 2021. 7. 19.

발 의 자:신현영·홍기원·이수진

이용우 · 임호선 · 이용빈

신정훈 · 오영환 · 최종윤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도 및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 의 기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 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 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 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 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9조의2(시·도건강증진사업지
	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
	・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제19조에 따
	른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효율
	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
	하여 시 · 도건강증진사업지원
	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u>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u>
	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수있다.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u>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
	<u>치·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